



: 2019-07-25

## 대구지방법원

### 제 1 행정부

#### 판 결

사 건 2018구합25303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 [redacted]
-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군수
  3. [redacted]군수
  4. [redacted]시장
  5. [redacted]시장
  6. [redacted]군수
  7. [redacted]군수
  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9.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0. [redacted]시장
  11. [redacted]군수
  12. [redacted]시장
  13. [redacted]시장
  14. [redacted]군수



: 2019-07-25

15. [redacted] 군수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5. 1.

판 결 선 고 2019. 6. 5.

### 주 문

1. 피고 [redacted] 군수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제8 기재 부과처분, 피고 [redacted] 군수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제48 내지 50 기재 각 부과처분, 피고 [redacted] 군수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제69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 군수, [redacted] 군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 군수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의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2 목록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취득하고 2013. 12. 24.부터 2018. 6. 25.까지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위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면제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도지사의 피고들에 대한 지방세 조사계획 통보

■■■■■도지사는 2018. 1.경 피고들에게 '원고가 판결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감면내역을 조사하여 2010. 12. 31. 이전에 취득하고 2011. 1. 1. 이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조사계획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등

1) 이에 피고 ■■■■시장, ■■■■군수, ■■■■군수, ■■■■시장, ■■■■시장, ■■■■군수, ■■■■군수, ■■■■시 ■■■■구청장, ■■■■시 ■■■■구청장, ■■■■시장, ■■■■군수, ■■■■시장, ■■■■시장, ■■■■군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내지 47, 49 내지 68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2010. 12. 31. 이전에 취득하고 2011. 1. 1. 이후 등기한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개정 전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 9302호, 2008. 12. 31.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내지 47, 49 내지 68 기재<sup>1)</sup>와 같이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에 피고 ■■■군수, ■■■군수, ■■■군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목록 순번 제8, 48, 69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무변론 판결, 공시송달 판결, 자백간주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으로 쌍방의 다툼에 대하여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변론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별지 1 목록 순번 제8, 48, 69 기재<sup>2)</sup>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68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경산시장은 2017. 12. 1. 위 다의 1)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제8 내지 12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1. 경

1) 별지 2 목록 각 해당 순번 기재 토지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각 해당 순번 기재 처분이 이루어졌다.

2) 별지 2 목록 각 해당 순번 기재 토지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각 해당 순번 기재 처분이 이루어졌다.



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5.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3) 원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24, 26 내지 50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6, 43 내지 5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197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 사건 면제조항과 같은 취지로 정한 규정들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 토지에 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아왔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라는 단일한 세목으로 정비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행 이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여전히 등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두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등에 대한 등록세가 명목상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의 마지막 적용기한(2010. 12. 31.)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①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면제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개정 지방세법은 법령의 체계를 정비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기존의 등록세 감면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한 취지는 아닌 점, ③ 본래 이 사건 면제조항도 2012. 12. 31.까지 그 적용기한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개



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2011. 1. 1.인 점을 고려하여 2010. 12. 31.까지만 연장되었고, 그 이후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형태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존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취득·등기가 분리된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이나 개정 지방세법 어디에서도 등록세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입법의 공백 내지 흠결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 전 지방세법이나 개정 지방세법에서 취득과 등기를 함께 마친 경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과세 불공평을 초래한다.

따라서 제1토지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합목적적인 해석 방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인 제1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설령 제1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지방세법 등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중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고가 제2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화해권고결정이나 무변론, 공시송달 판



결 등에서 드러난 1943년 내지 1994년이라 할 것이므로, 제2토지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 취득일 무렵부터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 ■■■군수, ■■■군수의 주장대로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4) 피고 ■■■군수의 부과처분의 위법성

피고 ■■■군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48 내지 50 기재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48 내지 50 기재 각 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면제조항의 개정 경위 및 내용

(1) 개정 전 지방세법 아래에서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은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참조).

(2) 개정 지방세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지나(제6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고 정하였다. 한편 종전의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 제1호(이 사건 면제조항)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위 제266조의 규정은 2010. 12. 31.까지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3) 그리고 개정 지방세법과 같은 시기에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이 사건 면제조항과 같은 취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한다고 정하였고, 그 적용기한은 순차로 개정되어 2012. 12. 31., 2015. 12. 31. 및 2019. 12. 31.로 각 연장되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이하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5조와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를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나) 제1토지에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개정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등록세 납부의무의 감면에 관한 종전의 규정인 이 사건 면제조항은 2010. 12. 31.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登記 또는 등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0. 12. 31. 내에登記한 경우에만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토지는 2010. 12. 31. 이후登記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기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한 것이 지방세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의 공백이나 흠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면제조항의 명시적인 적용기한(2010. 12. 3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1. 이후 납부의무가 성립한 등록세에 대하여서까지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목적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문리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 1371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0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면제조항은 당초부터 일정한 기간(2010. 12. 31.)까지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 감면에 대한 기왕의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 여부에 맡겨진 신축적이고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결국 원고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2010. 12. 31. 이후에 등기한 제1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 나) 판단

앞서 살펴본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1토지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등록세의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나) 제2토지의 취득일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1, 제12호증의1,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A문증을 상대로 제2토지 중 ■■■ B 유지 868평(별지 2 목록 순번 8토지)에 관하여 1943.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단69444)을 제기하여 2003. 8. 26.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C 외 29명을 상대로 제2토지 중 ■■■■군 D 유지 139㎡(별지 2 목록 순번 48토지)에 관하여 1967. 10. 1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 125876)을 제기하여 2015년경 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및 공시송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국을 상대로 제2토지 중 ■■■■군 ■■■■면 ■■■■리 ■■■■도로 737㎡ 외 ■■■ 필지(별지 2 목록 순번 ■■■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및 1994. 3. 10.자 이관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가단10833)을 제기하여 2017년경 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소송 중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드러난 당사자의 관계, 위 각 토지의 이용형태나 취득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2토지를 각 1943. 12. 31., 1967. 10. 15., 1994. 3. 10. 매매, 취득시효 완성 및 이관을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2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훨씬 경과한 후인



2018. 1. 8., 같은 해 4. 10., 같은 해 3. 15. 각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산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징수되는 것이어서(개정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본세인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등 참조), 본세인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세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군수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48 내지 50 기재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군수의 위 각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



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5) 소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8, 48 내지 50, 69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별지 1 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내지 47, 51 내지 68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용수



별지 1

목록

순번	피고	처분일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세액	비고
1	[Redacted] 시장	2018.03.09		1,589,190	293,180			1,882,370	
2	[Redacted] 시장	2018.03.09		189,450	34,570			224,020	
3	[Redacted] 시장	2018.03.09		2,292,740	418,410			2,711,150	
4	[Redacted] 군수	2018.02.12		114,460	22,880			137,340	가산세 포함
5	[Redacted] 군수	2018.02.12		221,780	40,850			262,630	가산세 포함
6	[Redacted] 군수	2018.02.12		158,570	29,090			187,660	가산세 포함
7	[Redacted] 군수	2018.02.12		473,230	86,260			559,490	가산세 포함
8	[Redacted] 군수	2018.01.08	4,117,010		352,880	235,250	2,235,400	6,940,540	
9	[Redacted] 군수	2018.01.08		1,008,430	183,350			1,191,780	가산세 포함
10	[Redacted] 군수	2018.01.08		27,380,070	4,978,190			32,358,260	가산세 포함
11	[Redacted] 군수	2018.01.08		406,680	73,940			480,620	가산세 포함
12	[Redacted] 군수	2018.01.08		1,006,870	183,060			1,189,930	가산세 포함
13	[Redacted] 군수	2018.03.26		278,250	50,590			328,840	가산세 포함
14	[Redacted] 군수	2018.03.26		852,060	154,920			1,006,980	가산세 포함
15	[Redacted] 군수	2018.03.26		3,054,560	555,370			3,609,930	가산세 포함
16	[Redacted] 군수	2018.03.26		66,370	12,060			78,430	가산세 포함
17	[Redacted] 군수	2018.03.26		553,740	100,680			654,420	가산세 포함
18	[Redacted] 군수	2018.03.26		103,650	18,840			122,490	가산세 포함
19	[Redacted] 군수	2018.03.26		14,050	2,550			16,600	가산세 포함
20	[Redacted] 군수	2018.03.26		213,010	38,730			251,740	가산세 포함
21	[Redacted] 군수	2018.03.26		385,460	70,080			455,540	가산세 포함
22	[Redacted] 군수	2018.03.26		397,260	72,230			469,490	가산세 포함
23	[Redacted] 시장	2018.03.08		1,141,080	228,200			1,369,280	
24	[Redacted] 시장	2018.03.08		919,570	183,900			1,103,470	
25	[Redacted] 시장	2018.11.05		550,240	110,040			660,280	가산세 포함
26	[Redacted] 시장	2018.03.12		343,610	68,710			412,320	가산세 포함
27	[Redacted] 시장	2018.03.12		38,210	7,630			45,840	가산세 포함
28	[Redacted] 시장	2018.03.12		74,780	14,950			89,730	가산세 포함
29	[Redacted] 군수	2018.03.26		80,970	14,910			95,880	가산세 포함
30	[Redacted] 군수	2018.03.26		23,710	4,360			28,070	가산세 포함
31	[Redacted] 군수	2018.03.26		8,950	1,790			10,740	
32	[Redacted] 군수	2018.03.26		490,360	98,070			588,430	
33	[Redacted] 군수	2018.03.26		5,300	1,060			6,360	



: 2019-07-25

34	구청장	2018.04.10		39,230	7,180			46,410	가산세 포함
35	구청장	2018.04.10		31,110	5,690			36,800	가산세 포함
36	구청장	2018.04.10		237,870	43,820			281,690	가산세 포함
37	구청장	2018.04.10		33,287,520	6,151,020			39,438,540	가산세 포함
38	구청장	2018.04.10		172,500	32,110			204,610	가산세 포함
39	구청장	2018.04.10		76,530	14,320			90,850	가산세 포함
40	구청장	2018.04.10		145,256,060	26,502,630			171,758,690	가산세 포함
41	구청장	2018.04.10		24,860	4,620			29,480	가산세 포함
42	구청장	2018.04.10		1,585,360	295,810			1,881,170	가산세 포함
43	구청장	2018.04.10		8,320	1,550			9,870	가산세 포함
44	구청장	2018.04.10		8,008,290	1,464,570			9,472,860	가산세 포함
45	시장	2018.04.30		884,160	170,340			1,054,500	
46	시장	2018.04.30		210,850	40,600			251,450	
47	시장	2018.04.30		4,060	780			4,840	
48	군수	2018.04.10	85,000		7,270	4,850		97,120	
49	군수	2018.04.10		3,000	600			3,600	
50	군수	2018.04.10		27,600	5,520			33,120	
51	시장	2018.10.01.		135,400	27,080			162,480	
52	시장	2018.10.01.		334,500	66,900			401,400	
53	시장	2018.10.01.		299,230	59,840			359,070	
54	시장	2018.10.01.		670,250	134,040			804,290	
55	시장	2018.10.01.		500,820	100,160			600,980	
56	시장	2018.10.01.		28,890	5,760			34,650	
57	시장	2018.10.01.		25,480	5,090			30,570	
58	시장	2018.10.01.		786,700	157,330			944,030	
59	시장	2018.10.01.		109,810	21,950			131,760	
60	시장	2018.10.17.		11,630	2,320			13,950	
61	시장	2018.10.17.		2,780,560	556,110			3,336,670	
62	군수	2018.10.24.		357,820	71,560			429,380	
63	군수	2018.10.24.		200,930	40,180			241,110	
64	군수	2018.10.24.		440,560	88,110			528,670	
65	군수	2018.10.24.		115,410	23,080			138,490	
66	군수	2018.10.24.		82,690	16,530			99,220	
67	군수	2018.10.26.		37,060	7,410			44,470	
68	시장	2017.12.01.		4,788,420	957,680			5,746,100	경정청구거부 (가산세포함)
69	군수	2018.03.15	22,746,330		1,949,680	5,849,050	458,150	31,003,210	





: 2019-07-25

별지 2

목록

순번	피고	과세대상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방법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시정			도로	340.0	1989.12.31	이관	판결(변론)
1	시정			도로	165.0	1989.12.31		
1	시정			유지	19,286.0	1989.12.31		
1	시정			도로	694.0	1989.12.31		
1	시정			도로	2,643.0	1989.12.31		
1	시정			유지	669.0	1989.12.31		
1	시정			유지	628.0	1989.12.31		
1	시정			유지	681.0	1989.12.31		
1	시정			도로	47.3	1989.12.31		
1	시정			도로	36.0	1989.12.31		
1	시정			유지	2,446.0	1989.12.31		
1	시정			구거	754.0	1989.12.31		
1	시정			유지	1,031.0	1989.12.31		
1	시정			유지	109.0	1989.12.31		
1	시정			유지	516.0	1989.12.31		
1	시정			구거	436.0	1989.12.31		
1	시정			유지	546.0	1989.12.31		
1	시정			유지	436.0	1989.12.31		
1	시정			도로	1,160.0	1989.12.31		
1	시정			유지	853.0	1989.12.31		
1	시정			유지	27,852.0	1989.12.31		



: 2019-07-25

1	시장		유지	301.0	1989.12.31		
1	시장		도로	56.0	1989.12.31		
1	시장		유지	160.0	1989.12.31		
1	시장		유지	545.0	1989.12.31		
1	시장		유지	132.0	1989.12.31		
1	시장		유지	823.0	1989.12.31		
1	시장		유지	344.0	1989.12.31		
1	시장		유지	99.0	1989.12.31		
1	시장		유지	89.0	1989.12.31		
1	시장		유지	198.0	1989.12.31		
1	시장		유지	26.0	1989.12.31		
1	시장		유지	532.0	1989.12.31		
1	시장		유지	20.0	1989.12.31		
1	시장		유지	268.0	1989.12.31		
1	시장		유지	36.0	1989.12.31		
1	시장		유지	307.0	1989.12.31		
1	시장		유지	545.0	1989.12.31		
1	시장		유지	7.0	1989.12.31		
1	시장		유지	159.0	1989.12.31		
1	시장		유지	274.0	1989.12.31		
1	시장		유지	397.0	1989.12.31		
1	시장		유지	30.0	1989.12.31		
1	시장		유지	568.0	1989.12.31		
1	시장		유지	145.0	1989.12.31		



: 2019-07-25

1	시장		유지	238.0	1989.12.31		
1	시장		유지	50.0	1989.12.31		
1	시장		유지	281.0	1989.12.31		
1	시장		유지	92.0	1989.12.31		
1	시장		유지	79.0	1989.12.31		
1	시장		유지	357.0	1989.12.31		
1	시장		유지	489.0	1989.12.31		
1	시장		유지	159.0	1989.12.31		
1	시장		구거	2,448.0	1989.12.31		
1	시장		유지	332.0	1989.12.31		
1	시장		유지	377.0	1989.12.31		
1	시장		유지	17,236.0	1989.12.31		
1	시장		유지	465.0	1989.12.31		
1	시장		유지	2,162.0	1989.12.31		
1	시장		유지	61,765.0	1989.12.31		
1	시장		유지	823.0	1989.12.31		
1	시장		유지	714.0	1989.12.31		
1	시장		유지	238.0	1989.12.31		
1	시장		유지	112.0	1989.12.31		
1	시장		유지	1,028.0	1989.12.31		
1	시장		유지	4,347.0	1989.12.31		
1	시장		유지	833.0	1989.12.31		
1	시장		유지	89.0	1989.12.31		
1	시장		유지	307.0	1989.12.31		



: 2019-07-25

1	시정		유지	40.0	1989.12.31		
1	시정		유지	334.0	1989.12.31		
1	시정		유지	116.0	1989.12.31		
1	시정		유지	3,104.0	1989.12.31		
1	시정		유지	674.0	1989.12.31		
1	시정		유지	43.0	1989.12.31		
1	시정		유지	298.0	1989.12.31		
1	시정		유지	268.0	1989.12.31		
1	시정		유지	987.0	1989.12.31		
1	시정		유지	192.0	1989.12.31		
1	시정		유지	39.0	1989.12.31		
1	시정		유지	4,594.0	1989.12.31		
1	시정		유지	683.0	1989.12.31		
1	시정		유지	138.0	1989.12.31		
1	시정		유지	228.0	1989.12.31		
1	시정		유지	109.0	1989.12.31		
1	시정		유지	774.0	1989.12.31		
1	시정		유지	853.0	1989.12.31		
1	시정		유지	208.0	1989.12.31		
1	시정		유지	730.0	1989.12.31		
1	시정		유지	589.0	1989.12.31		
1	시정		도로	16,952.0	1989.12.31		
1	시정		도로	2,563.0	1989.12.31		
1	시정		유지	16.0	1989.12.31		



: 2019-07-25

1	시장		유지	5,939.0	1989.12.31		
1	시장		구거	618.0	1989.12.31		
1	시장		유지	952.0	1989.12.31		
1	시장		유지	96.0	1989.12.31		
1	시장		유지	2,205.0	1989.12.31		
1	시장		유지	147,178.0	1989.12.31		
1	시장		유지	6,108.0	1989.12.31		
1	시장		유지	2,526.0	1989.12.31		
1	시장		유지	615.0	1989.12.31		
1	시장		유지	3,800.0	1989.12.31		
1	시장		유지	1,170.0	1989.12.31		
1	시장		유지	2,281.0	1989.12.31		
1	시장		유지	757.0	1989.12.31		
1	시장		유지	856.0	1989.12.31		
1	시장		유지	1,863.0	1989.12.31		
1	시장		도로	423.0	1989.12.31		
1	시장		유지	1,362.0	1989.12.31		
1	시장		유지	853.0	1989.12.31		
1	시장		유지	1,273.0	1989.12.31		
1	시장		유지	1,874.0	1989.12.31		
1	시장		유지	2,033.0	1989.12.31		
1	시장		유지	803.0	1989.12.31		
1	시장		유지	162.0	1989.12.31		
1	시장		유지	1,498.0	1989.12.31		



: 2019-07-25

1	시장		유지	585.0	1989.12.31		
1	시장		유지	119.0	1989.12.31		
1	시장		유지	793.0	1989.12.31		
1	시장		유지	200.0	1989.12.31		
1	시장		유지	1,342.0	1989.12.31		
1	시장		유지	690.0	1989.12.31		
1	시장		유지	138.0	1989.12.31		
1	시장		유지	138.0	1989.12.31		
1	시장		유지	1,329.0	1989.12.31		
1	시장		유지	416.0	1989.12.31		
1	시장		유지	707.0	1989.12.31		
2	시장		도로	388.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2	시장		도로	803.0	1970.01.12		
2	시장		도로	964.0	1970.01.12		
2	시장		도로	436.0	1970.01.12		
2	시장		구거	704.0	1970.01.12		
2	시장		구거	1,180.0	1970.01.12		
3	시장		유지	2,421.0	2002.09.12		
3	시장		유지	23,765.0	2002.09.12		
3	시장		유지	7,167.0	2002.09.12		
3	시장		유지	8,895.0	2002.09.12		
3	시장		유지	13,906.0	2002.09.12		
3	시장		유지	2,714.0	2002.09.12		



: 2019-07-25

3	시장		유지	2,946.0	2002.09.12		
3	시장		도로	3.0	2002.09.12		
3	시장		답	99.0	2002.09.12		
3	시장		구거	2,416.0	2002.09.12		
3	시장		도로	2,408.0	2002.09.12		
3	시장		구거	2,172.0	2002.09.12		
3	시장		유지	11,289.0	2002.09.12		
3	시장		유지	6,903.0	2002.09.12		
3	시장		유지	3,735.0	2002.09.12		
3	시장		유지	2,535.0	2002.09.12		
3	시장		유지	861.0	2002.09.12		
3	시장		유지	4,261.0	2002.09.12		
4	군수		유지	1,010.0	1970.01.12	이관	판결(무변론)
5	군수		답	3,217.0	1985.06.30	취득시효완성	판결 (공시송달,자백간주)
6	군수		유지	2,341.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 (공시송달,자백간주)
6	군수		유지	83.0	1963.12.31		
7	군수		하천	6,043.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8	군수		유지	2,869.0	1943.12.31	매매	판결(무변론)
9	군수		유지	11,937.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10	군수		구거	2,202.0	1985.01.29	이관	화해관고결정
10	군수		구거	45.0	1985.01.29		
10	군수		구거	28.0	1985.01.29		
10	군수		구거	479.0	1985.01.29		



: 2019-07-25

10	군수		구거	160.0	1985.01.29		
10	군수		구거	381.0	1985.01.29		
10	군수		도로	1,323.0	1985.01.29		
10	군수		구거	836.0	1985.01.29		
10	군수		도로	321.0	1985.01.29		
10	군수		구거	1,583.0	1985.01.29		
10	군수		유지	102.0	1985.01.29		
10	군수		도로	132.0	1985.01.29		
10	군수		구거	1,197.0	1985.01.29		
10	군수		구거	145.0	1985.01.29		
10	군수		구거	12,076.0	1985.01.29		
10	군수		도로	939.0	1985.01.29		
10	군수		구거	83.0	1985.01.29		
10	군수		구거	49,827.0	1985.01.29		
10	군수		구거	1,448.0	1985.01.29		
10	군수		도로	972.0	1985.01.29		
10	군수		도로	572.0	1985.01.29		
10	군수		도로	2,023.0	1985.01.29		
10	군수		구거	145.0	1985.01.29		
10	군수		도로	307.0	1985.01.29		
11	군수		유지	14,759.0	2008.01.12	취득시효완성	화해권고결정
12	군수		제방	476.0	2005.06.03	취득시효 완성	판결(무변론)
13	군수		담	680.0	2008.05.12	취득시효 완성	화해권고결정





: 2019-07-25

14	군수		유지	2,582.0	2005.01.29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15	군수		구거	5,237.0	1970.01.12	이관	화해권고결정
15	군수		구거	1,221.0	1970.01.12		
15	군수		구거	217.0	1970.01.12		
15	군수		도로	367.0	1970.01.12		
15	군수		도로	120.0	1970.01.12		
15	군수		도로	4,976.0	1970.01.12		
15	군수		도로	198.0	1970.01.12		
15	군수		도로	628.0	1970.01.12		
16	군수		구거	123.0	1987.11.24		
16	군수		구거	29.0	1987.11.24		
16	군수		구거	26.0	1987.11.24		
17	군수		임야	8,307.0	1985.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자백간주)
18	군수		유지	566.0	1999.07.26	증여	판결(변론)
19	군수		구거	159.0	2005.02.21	취득시효완성	판결(무변론)
20	군수		유지	2,582.0	1989.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21	군수		유지	1,488.0	1966.02.21	매매	판결(무변론)
22	군수		유지	392.0	2004.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무변론)
22	군수		유지	862.0	2004.12.31		
23	시장		구거	29.0	1997.08.04	이관	판결(변론)
23	시장		구거	2,116.0	1997.08.04		
23	시장		구거	2,106.0	1997.08.04		
23	시장		구거	2,926.2	1997.08.04		
23	시장		구거	1,609.5	1997.08.04		



: 2019-07-25

23	시장		구거	254.9	1997.08.04		
23	시장		구거	2,560.4	1997.08.04		
23	시장		구거	1,812.8	1997.08.04		
23	시장		구거	1,931.3	1997.08.04		
23	시장		구거	22.0	1997.08.04		
23	시장		구거	905.9	1997.08.04		
23	시장		구거	4,019.4	1997.08.04		
23	시장		하천	52.0	1997.08.04		
23	시장		하천	1.0	1997.08.04		
23	시장		하천	926.0	1997.08.04		
24	시장		제방	146.0	1997.08.04		
24	시장		제방	153.0	1997.08.04		
24	시장		제방	144.0	1997.08.04		
24	시장		제방	122.0	1997.08.04		
24	시장		제방	57.0	1997.08.04		
24	시장		제방	18.0	1997.08.04		
24	시장		제방	37.0	1997.08.04	이관	화해권고결정
24	시장		제방	21.0	1997.08.04		
24	시장		제방	65.0	1997.08.04		
24	시장		제방	144.0	1997.08.04		
24	시장		구거	6,506.0	1997.08.04		
24	시장		구거	410.0	1997.08.04		
24	시장		구거	147.0	1997.08.04		



: 2019-07-25

24	시장	구거	32.0	1997.08.04
24	시장	도로	9.0	1997.08.04
24	시장	제방	61.0	1997.08.04
24	시장	제방	111.0	1997.08.04
24	시장	제방	114.0	1997.08.04
24	시장	제방	59.0	1997.08.04
24	시장	제방	227.0	1997.08.04
24	시장	제방	150.0	1997.08.04
24	시장	제방	60.0	1997.08.04
24	시장	제방	52.0	1997.08.04
24	시장	제방	43.0	1997.08.04
24	시장	제방	14.0	1997.08.04
24	시장	제방	100.0	1997.08.04
24	시장	제방	105.0	1997.08.04
24	시장	구거	42.0	1997.08.04
24	시장	구거	118.0	1997.08.04
24	시장	하천	407.0	1997.08.04
24	시장	담	51.0	1997.08.04
24	시장	담	74.0	1997.08.04
24	시장	하천	97.0	1997.08.04
24	시장	제방	296.0	1997.08.04
24	시장	제방	219.0	1997.08.04
24	시장	구거	6,262.0	1997.08.04
24	시장	구거	200.0	1997.08.04



: 2019-07-25

24	시장		구거	24.0	1997.08.04		
24	시장		구거	519.0	1997.08.04		
24	시장		구거	7.0	1997.08.04		
24	시장		도로	35.7	1997.08.04		
24	시장		답	52.9	1997.08.04		
24	시장		답	132.9	1997.08.04		
24	시장		도로	248.6	1997.08.04		
24	시장		도로	103.3	1997.08.04		
24	시장		구거	349.9	1997.08.04		
24	시장		구거	5.1	1997.08.04		
24	시장		구거	464.4	1997.08.04		
24	시장		도로	39.4	1997.08.04		
24	시장		도로	32.2	1997.08.04		
24	시장		제방	216.5	1997.08.04		
24	시장		구거	0.8	1997.08.04		
24	시장		구거	18.6	1997.08.04		
24	시장		제방	64.0	1997.08.04		
24	시장		제방	39.0	1997.08.04		
24	시장		제방	63.0	1997.08.04		
24	시장		답	1.0	1997.08.04		
25	시장		묘지	3,283.0	1970.01.12	이관	1심판결(변론) 항소심화해권고결 정
25	시장	유지	307.0	1970.01.12			
25	시장	임야	2,764.0	1970.01.12			
26	시장			926.0	1985.06.07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 2019-07-25

27	시장		임야	211.0	2001.12.29	취득시효완성	판결(자백간주)
27	시장		임야	228.0	2001.12.29		
27	시장		유지	623.0	2001.12.29		
27	시장		유지	43.0	2001.12.29		
28	시장		유지	2,599.0	1990.01.12		
28	시장		유지	818.0	1990.01.12		
28	시장		유지	550.0	1990.01.12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29	군수		임야	1,568.0	1998.03.14		
29	군수		임야	316.0	1998.03.14		
29	군수		임야	19.0	1998.03.14		
29	군수		임야	33.0	1998.03.14		
29	군수		임야	92.0	1998.03.14		
29	군수		임야	478.0	1998.03.14		
29	군수		임야	425.0	1998.03.14		
29	군수		임야	35.0	1998.03.14		
30	군수		임야	204.0	1998.03.14		
30	군수		임야	1,939.0	1998.03.14		
30	군수		임야	474.0	1998.03.14		
31	군수		유지	4,236.0	1996.06.30	증여	협의(증여)
32	군수		전	127.0	1990.01.12	취득시효완성	화해관고결정
32	군수		유지	400.0	1990.01.12		
32	군수		답	1,273.0	1990.01.12		
32	군수		전	428.0	1990.01.12		
33	군수		유지	1,530.0	1990.01.12	취득시효완성	판결(자백간주,공시송달)



: 2019-07-25

34		구거	112.0	1985.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35		전	522.0	2007.12.31	취득시효완성	화해권고결정
36		구거	64.0	1985.06.29	취득시효완성	화해권고결정
36		구거	1,493.0	1985.06.29		
36		구거	129.0	1985.06.29		
37		구거	65,435.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38		유지	251.0	1970.01.12	이관	협의(이관)
38		임야	691.0	1970.01.12		
38		유지	2,182.0	1970.01.12		
39		구거	240.0	1965.03.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39		구거	119.0	1965.03.31		
39		구거	1,274.0	1965.03.31		
40		도로	1,964.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40		구거	21,967.0	1970.01.12		
40		구거	60,685.0	1970.01.12		
40		구거	63,160.0	1970.01.12		
40		구거	927.0	1970.01.12		
40		구거	45,322.0	1970.01.12		
40		제방	1,924.0	1970.01.12		
40		구거	2,331.0	1970.01.12		
40		제방	1,101.0	1970.01.12		
40		구거	1,855.0	1970.01.12		
40		도로	2,112.0	1970.01.12		



: 2019-07-25

40		구거	44,846.0	1970.01.12		
41		임야	8,068.0	1988.02.24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42		사적지	281.0	1970.01.12	이관	이관
42		유지	15,954.0	1970.01.12		
42		유지	198.0	1970.01.12		
42		유지	417.0	1970.01.12		
42		유지	202.0	1970.01.12		
42		임야	453.0	1970.01.12		
43		구거	66.0	1998.12.30		
44		구거	240.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44		구거	494.0	1970.01.12		
44		구거	496.0	1970.01.12		
44		구거	514.0	1970.01.12		
44		구거	50.0	1970.01.12		
44		구거	56.0	1970.01.12		
44		구거	242.0	1970.01.12		
44		구거	799.0	1970.01.12		
44		구거	83.0	1970.01.12		
44		구거	43.0	1970.01.12		
44		구거	28.0	1970.01.12		
44		구거	9.0	1970.01.12		
44		구거	30.0	1970.01.12		
44		구거	34.0	1970.01.12		



: 2019-07-25

44		도로	751.0	1970.01.12		
44		도로	26.0	1970.01.12		
44		도로	304.0	1970.01.12		
44		도로	129.0	1970.01.12		
44		구거	195.0	1970.01.12		
44		구거	4,076.0	1970.01.12		
45		유지	2,655.0	1982.04.16	이관	협의(이관)
45		유지	3,167.0	1982.04.16		
45		유지	2,119.0	1982.04.16		
45		유지	2,327.0	1982.04.16		
45		유지	2,294.0	1982.04.16		
45		유지	893.0	1982.04.16		
45		유지	132.0	1982.04.16		
45		유지	450.0	1982.04.16		
46		잡종지	31.2/52	1990.01.12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46		잡종지	257.4/429	1990.01.12		
46		잡종지	1.8/3	1990.01.12		
46		잡종지	1.2/2	1990.01.12		
47	잡종지	20.8/52	1990.01.12			
47	잡종지	171.6/429	1990.01.12			
47	잡종지	1.2/3	1990.01.12			
47	잡종지	0.8/2	1990.01.12			
48	유지	139.0	1967.10.15	취득시효완성	화해권고결정및 판결(공시송달, 자백 간주)	





: 2019-07-25

49		구거	23.0	1960.08.26	매매	판결(무변론)
50		구거	460.0	1960.08.17	매매	판결(무변론)
51		유지	357.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화해권고결정
52		답	387.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공시송달, 자백 간주)
53		유지	1,283.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무변론)
54		유지	2,936.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무변론)
55		유지	2,258.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화해권고결정
56		유지	327.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57		유지	192.0	1994.04.06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58		유지	2,698.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무변론)
59		임야	1,983.0	1994.04.06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60		임야	484.61/793	1996.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자백간주, 공시 송달)
60		임야	1454.44/2380	1996.12.31		
61		유지	44,364.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61		구거	2,886.0	1970.01.12		
62		답	1,927.0	1965.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62		전	906.0	1965.12.31		
63		유지	1,716.0	1965.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63		유지	186.75/747	1965.12.31		
64		유지	3,220.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64		유지	423.0	1963.12.31		
64		유지	529.0	1963.12.31		
65		전	840.0	1983.02.16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 2019-07-25

66		유지	648.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66		유지	217.0	1963.12.31		
67		유지	436.0	1963.12.31	취득시효완성	판결(변론)
68		유지	25,968.0	1970.01.12	이관	판결(변론)
68		구거	1,184.0	1970.01.12		
68		구거	803.0	1970.01.12		
68		도로	1,332.0	1970.01.12		
69		도로	737.0	1970.01.12	이관	화해권고결정
69		유지	1,950.0	1970.01.12		
69		유지	1,067.0	1970.01.12		
69		유지	26.0	1970.01.12		
69		유지	53.0	1970.01.12		
69		유지	102.0	1970.01.12		
69		유지	453.0	1970.01.12		
69		유지	30.0	1970.01.12		
69		유지	53.0	1970.01.12		
69		유지	638.0	1970.01.12		
69		유지	36.0	1970.01.12		
69		유지	23.0	1970.01.12		
69		유지	40.0	1970.01.12		
69	유지	33.0	1970.01.12			
69	유지	17.0	1970.01.12			
69	유지	3,309.0	1970.01.12			



: 2019-07-25

69		유지	8,833.0	1970.01.12		
69		유지	142.0	1970.01.12		
69		유지	2,724.0	1970.01.12		
69		유지	215.0	1970.01.12		
69		제방	6,448.0	1970.01.12		
69		유지	131,217.0	1970.01.12		
69		유지	6,020.0	1970.01.12		
69		유지	1,656.0	1970.01.12		
69		도로	1,596.0	1970.01.12		
69		도로	564.0	1970.01.12		
69		도로	2,584.0	1970.01.12		
69		도로	608.0	1970.01.12		
69		도로	858.0	1970.01.12		
69		유지	120.0	1970.01.12		
69		유지	1,156.0	1970.01.12		
69		유지	1,495.0	1970.01.12		
69		구거	3,502.0	1970.01.12		
69		구거	36.0	1970.01.12		
69		유지	4,670.0	1970.01.12		
69		유지	1,106.0	1970.01.12		
69	구거	3,914.0	1994.03.10			
69	유지	6,873.0	1994.03.10			
69	유지	20,916.0	1994.03.10			
69	유지	18,641.0	1994.03.10			



: 2019-07-25

69		구거	2,959.0	1994.03.10		
69		구거	684.0	1994.03.10		
69		도로	869.0	1994.03.10		
69		구거	46.0	1994.03.10		
69		유지	5,319.0	1994.03.10		
69		임야	5,274.0	1994.03.10		
69		유지	4,333.0	1994.03.10		
69		유지	256.0	1994.03.10		
69		유지	880.0	1994.03.10		
69		유지	251.0	1994.03.10		
69		유지	694.0	1994.03.10		
69		유지	919.0	1994.03.10		
69		유지	2,063.0	1994.03.10		
69		유지	1,137.0	1994.03.10		
69		유지	3,451.0	1994.03.10		
69		유지	3,517.0	1994.03.10		
69		유지	998.0	1994.03.10		
69		유지	139.0	1994.03.10		
69		유지	487.0	1994.03.10		



### 별지 3

#### 관계 법령

####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登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법률 제9302호, 2008. 12. 31)

##### 제2조(적용시한)

제5장(제261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부터 제273조까지, 제273조의2, 제274조, 제274조의2, 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및 제278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0. 1. 1.>

####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임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칙<법률 제10221호, 2010. 3. 31.>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지방세기본법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